

국제 범죄란 무엇인가?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는 국제 범죄입니다. 국제형사법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과 같은 조약 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상당한 기간에 걸쳐 국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형사법은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틀을 마련합니다. 모든 국가는 국제형사법을 수호하고 국제 범죄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살해죄

집단살해죄는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집단살해방지협약”)에 의해 정의된 바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체계적으로 학살된 홀로코스트에 대응하여 유엔은 해당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집단살해죄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집단살해 행위는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된 환경을 강제하는 행위, 집단 내 출생을 금지하는 행위,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살해 금지가 국제법의 강행규범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이는 규범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항상 준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수의 나치 독일 지도자가 유럽의 유대인 수백만 명을 살해한 죄로 재판 및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에 의해 정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집단살해죄”라는 구체적인 범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보스니아 무슬림을 대상으로 자행된 집단살해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르완다의 소수민족 집단인 투치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집단살해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반인도범죄

반인도범죄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격의 맥락에서 자행된 특정 범죄를 지칭합니다. 반인도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해당 공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행되어야 합니다. 반인도범죄의 개념은 국제관습법과 더불어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의 국제 재판소 판례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집단살해죄나 전쟁범죄와 달리 반인도범죄는 아직 단일 국제법 조약으로 성문화되지 않았으나, 이를 위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은 국제공동체가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최근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행위를 가장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인도범죄는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 이주, 구금, 고문, 여러 형태의 성폭력, 특정 인구 집단의 박해, 강제 실종, 인종차별범죄, 그리고 유사한 중대성의 기타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과 관련하여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해당국 정치 체제 및 지도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일삼는다. 여기서 위협으로 여겨지는 이들이란 신앙생활을 하거나, 외국 영화나 음악 등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는 문화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당국을 떠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이 멈췄다는 신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쟁범죄

전쟁범죄는 전쟁법으로도 알려진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전쟁범죄라는 개념은 특히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발달했으며, 이때 국제인도법이 성문화되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다수의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성문화되어 있는데, 특히 조약의 경우 핵심이 되는 것은 1949년 채택된 4개의 제네바 협약과 이후 채택된 2개의 추가의정서입니다. 제네바 협약과 국제관습법은 국제적 및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분쟁 시 해당 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집단이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원과 민간인 구별, 교전 수단과 방법 제한, 전쟁포로 및 군대의 병자와 부상자 대우,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 공격 금지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범죄의 예로는 고의적 살해, 고문 또는 비인도적 대우, 고의적으로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일,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몰수, 전쟁포로가 적(본인을 포획한 군대 등)을 위해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